



- ▶ 2006. 11. 21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## 보도자료

- ▶ 고용보험정책팀장 이 재윤
- ▶ 담당사무관 이 수중
- TEL : 503-9763
- E-MAIL : rhy001@molab.go.kr
- FAX : 502-2714

### 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- 노동부, 오늘 23일부터 시행키로 확정 -

- 오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「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」가 도입된다.
- 「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」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,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이다.
-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, 파견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.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- 카드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,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.
-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이상,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.
-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.

- 또한, 서울·경인지역의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「고용보험전자카드제」를 점차 확대하여 '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.
-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「전자카드 방식」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리더기 구입비용(실비)을 지원하고, 신고실적(근로자 수)에 따라 월 30만~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- 「전자카드 방식」이 완비되면 건설일용근로자별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어,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수혜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.
-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는 지난 '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. 그러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「전자카드 방식」을 도입, 개선하게 되었다.
-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23일 공포,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“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상당수 비정규근로자가 훈련비용 걱정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이어 김차관은 “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전자카드제 방식 도입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,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”고 덧붙였다.